

정정보도청구권의 쟁점별 검토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1. 머리말

언론기본법의 제정(1980. 12. 31. 법률 제 3317 호로 제정되었으나, 동법시행령은 1981 1. 29. 대통령령 제 10190 호로 제정되었다)으로 우리 법체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정정보도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15년째이다. 시행 첫해인 1981년에 44건에 불과했던 언론중재 신청건수가 1993년에는 423건에 이르러 거의 10배에 육박할 만큼 정정보도청구권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평가되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중재신청을 거치고 난 후 정정보도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1993년 현재 128건에 이르고 그간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정정보도청구권 제도나 언론중재제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종래의 연구들은 주로 정정보도청구권 관련 규정들의 해석론과 비교법적 연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론에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 제도 시행초기에 이루어진 이들 연구는 다분히 이론적인데 치우쳐 있던 까닭에 각급 법원이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내린 판결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¹⁾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정정보도청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나름대로 판례도 축적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판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권리의 실현이 궁극적으로 사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때 판례의 입장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으리라고 본다. 특히 우리 법체계에서 언론에 대하여 국민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정정보도청구권임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필자가 판례 분석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낀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이론의 당부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판례의 입장이 올바르다면 이를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냉철한 비판을 통하여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쟁점에 따라서는 법원에 따라서 서로 어긋나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거나 아직 계속 중 이어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지 못한 때문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의 자의성이 개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판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그밖에 특정한 쟁점을 최초로 다룬 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몇몇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변경의 여지가 많이 열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서 정정보도청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판례들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분석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이유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 쟁점별로 판례의 입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의 분석대상이 된 판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 1 권(1990)에 수록된 판례 중 정정보도관계 판례와 『언론중재』 1990년 봄호부터 1994년 겨울호까지에 수록된 정정보도관련 판례들이다. 또한 이들 판례를 분석하되 문헌조사는 가급적 피하고 직접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이끌어낸 뒤 직접 분석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II.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²⁾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언론기본법 제 49 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³⁾

그러나 이것이 당시 대법원의 독창적인 작품은 아니며,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1983년에 정정보도청구권의 의미를 매우 정확하게 밝힌 바 있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현대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거나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 별도로 정기간행물 등에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를 마련한 것이므로…」⁴⁾ 이러한 두 판결의 취지는 그 후의 하급심 판결⁵⁾에서 수차 확인되었음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⁶⁾ 또한 최근에는 다시 한번 대법원이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반론권임을 재확인한 바있다.⁷⁾

III.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다.⁸⁾ 무엇을 사실적 주장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느냐,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느냐는 그 보도표현 내용에 대한 입증가능의 여부에서 구해야 할 것」⁹⁾이라거나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는 정확성과 완전성의 심사가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어야 한다¹⁰⁾고 함으로써 결국 입증가능성을 그

표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어떤 보도를 사실적 주장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확정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인용 형식의 보도

먼저 법원은 시민들의 반응을 인용하는 형식의 기사에 대하여 「...반응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11)고 하여 인용형식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인용형식을 취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짙은 언론기관의 보도관행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과 연관된 사례로서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옮겨 보도한 경우, 12) 다른 중앙일간신문의 기사와 수사기록의 일부 또는 수사관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보도한 것, 13) 다른 신문의 기사를 옮겨 보도한 경우, 14)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의 공문에 따라 게재한 경우 15)에도 이를 공표한 이상 그것은 공로된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고문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 16)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이 반드시 확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판결에 의하면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는 부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타인의 논평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지 위 기사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고 하고 있어 17) 인용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18)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란 이야기인데 거기에 평가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기성이 있는지 여부는 입증 가능한 사실이고 따라서 이를 공표한 기사는 이미 사실적 주장이 된 것으로 보는 것도 전혀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판례의 태도와 부합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사표현 또는 가치판단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그 판단에 법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다. 19) 결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을 넓히는 해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아직은 만족스런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사실적 주장」이란 객관적 사실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접하는 독자나 시청자가 객관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0) 독자나 시청자로서는 보도를 행하는 언론기관이나 방송국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달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도도 없으므로 언론기관이나 방송사의 보도가 논평이건 사실보도 이건간에 이를 객관적 사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1) 대중매체에게 진실보도의 의무가 인정되는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매우 타당하다. 물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적인 진실보도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나 언론은

공표사항의 진실성 · 출처 ·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심사할 의무가 있음은 분명하고 22) 이는 위의 해석론에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

2. 표제, 편집자주

한편 법원은 기사의 표제나, 시사성 및 독자의 관심을 고려하고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독자의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한 표현방식으로 작성되었다는 기사도입부분과 편집자주에 대해서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23)

이 역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판례의 입장을 조금 더 다듬어 간다면 독자확보를 위하여 기사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표제로 뽑거나 부제로 다는 무책임한 보도 관행에 대한 일정한 제동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3. 광고

한편 기사가 아닌 광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은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고는 언론이 광고주와의 관계에서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4)

4. 공개회의와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

정간물법 제 16 조 제 6 항과 방송법 제 41 조 제 7 항

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못 명확하여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기사의 범위를 매우 좁게 봄으로써 사실상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 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례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25)

위 판례에 따르면 공개회의나 공개재판절차를 사실보도의 경우에 한해서만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것으로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된 진술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여 그 내용을 요약한 보도」가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다. 26)

IV.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1. 당사자 능력

한편 위와 같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려는 법원의 노력은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능력의 인정범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청구에는 민사소송법상 가치분절차를 적용하도록 한 법규정(정간물법 제 19 조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보다 훨씬 넓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가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신속·엄정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써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7)

그 밖에도 대한예수교 오순절성결회는 목사 수명의 집단으로 소속교회의 숫자가 아직 교단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국제오순절성결회의 승인 하에 11 개 교회의 담임목사 등이 조직한 종교단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활동개체라고 하여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고, 28) 학교 또는 학교장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영조물 시설 또는 그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학교는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써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 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으며, 29)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는 계속성이 있는 목적이 있다든지 총회의 운영이나 대표자의 선임방법에 관한 규약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으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써 활동하고 있는 개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30)

이처럼 당사자능력을 민사소송법보다 넓게 인정하는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만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성질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기자협회 충청도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바,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1)고 하여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써 활동하고 있는 개체인지 여부에 관한 뚜렷한 판단 없이 독립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도 있다.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로서 보다 실질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2. 피해를 받은 자

한편 현행법상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다. 어떤 경우에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인가? 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기본법 제 49 조 제 1 항에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2)

이 판례에 의하면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기본으로 하여 지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의 피해를 인격적 법익의 침해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태도 33)에는 찬성할 수 없으나 다른 논문을 통하여 이 점을 밝힌바 있으므로 34) 여기서 따로 논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판결에서는 보도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그 이후 하급심에서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해의 판단에 보도의 진실성이 고려요소가 된다는 판결도 나타나고 있다. 35)

(1)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경우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거나 지명된 것으로 보고 있는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성명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속과 성씨가 명기된 공무원의 경우 지명된 것으로 본 사례가 있다. 이 때 법원은 「편견 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또는 그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 으리란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36)

둘째, 수기를 게재하면서 필자와 수기 속에 등장하는 학생(필자의 아들)의 성명을 다르게 표시하였더라도 필자의 주소, 연령, 가족관계, 아파트층수 등이 일치한 경우에도 필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그 근거는 「신청인을 알거나 위 사고가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신청인이 쓴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 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7)

셋째, 다수의 회사를 상대로 한 기사에서 그 모두에 한 회사의 상호를 대표적으로 기재한 경우 이 회사를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38)

넷째, 기자협회보에서 영문 첫 글자인 이니셜을 써서 보도했으나 그들의 경력이나 평판, 기사보도 직후에 이를 인용 보도한 노조특보기사에서 그 이름이 거명된 경우, 영문 이니셜로 표기된 당사자는 기사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39) 다만 이 판결에서는 영문이니셜을 쓴 점을 정정보도청구권의 범위 결정에 참작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문제점이 많다. 영문이니셜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 성명을 명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해자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표시방법의 차이를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섯째, 학교를 영문 이니셜만으로 표기하거나 학교가 소재하는 동네만 명기하였더라도 그 학교에 다니다가 전학년 학생 및 그 어머니의 사진이 함께 게재된 경우 보도내용과 학교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역시 근거로는 「신청인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네주민 등 신청인 학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불특정다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였다.⁴⁰⁾

이상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법원은 대체로 개별적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성명이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전후 맥락을 통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성명이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전후 맥락을 통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간 입법론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상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부분인 「피해를 받은 자」(정간물법 제 16 조 제 1 항, 방송법 제 41 조 제 1 항, 구 언론기본법 제 16 조 제 1 항)라는 표현 41)에 대하여 법원 역시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이들 입법론을 해석론으로 전면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앞에서 본 사실적 주장과 가치판단의 구분에 관련된 법원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법원이 이러한 개별적 연관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의 판단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실적 주장인가 가치 판단인가 여부의 판단에서는 독자들의 판단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막상 개별적 연관성의 판단에서 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⁴²⁾ 법원이 진정 현행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적절한 해석론을 세우려고 했다면 굳이 한 단계를 지나서야 이런 시도를 했을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언론의 공익성과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비교형량 끝에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해석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선부른 절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법 자체가 철저히 언론에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단계를 양보한다는 것은 결국 정정보도청구권, 아니 반론권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권으로 인정하고, 반론권 제도의 기본적 전제가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사실적 주장의 판단에서부터 독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2) 개별적 연관성을 부정한 경우

① 사실적 주장의 발표자

기고문 등 사실적 주장을 정기간행물에 발표한자가 공표된 보도가 자신의 원고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는 언론사에서 타인의 글을 게재하면서 저작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원고내용을 가감, 삭제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관련하여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다.

법원은 이를 부정하면서 발표자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 그 자체를 발표한 주체적, 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공표된 내용 안에서 거론되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러한 경우는 「당초부터 언론기본법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43)

정정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반박문 게재 요구권이므로, 그러한 사실적 주장의 저작자가 자신의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4)

② 단체의 대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단체가 피해자인지 여부

한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어떤 단체의 대표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그 단체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위 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신청인 노회의 대표자인 소외 김만규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단체인 신청인 노회 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45) 단체는 단체 자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정정보도청구권 청구를 위한 당사자능력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V. 정정보도문의 형식

정정보도문의 형식에 관해서는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고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정간물 법 제 16 조 제 5 항, 방송법 제 41 조 제 5 항). 이 규정의 내용은 아주 명확한 까닭에 이에 관하여 특별한 판례가 형성된 바는 없다. 그러나 통상 반론권의 전제로서 「이의의 대상이 된 보도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무기대등의 원칙 46)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아니 아예 원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 믿는다. 47)

먼저 문제가 된 판결의 주문을 인용하고 문제점을 나누어 살펴 본다.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제주신문 제 1 면 하단부 광고지면에 가로 37cm, 세로 5 단 크기의 사각 테두리 내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은 특호 고딕활자로 우측 단 중앙에 세로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은 4 호 고딕활자로 그 좌측에 세로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은 본문활자로 위 소제목의 좌측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의 앞에 전주의 형식으로 또는 뒤에 후주의 형식으로 본문활자 200 자의 범위 내에서 정정보도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게재 할 수 있다.」 48)

1. 정정보도문을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는가?

이 판결에서 우선 문제되는 부분은 본문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광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이므로, 49)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원문기사가 광고가 아닌 본문 기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사는 제주신문의 제 1, 2 면의 우측 상단 부에 가로 13~17cm, 세로 7~8 단의 크기로 이른바 박스기사로 연재된 기사와 동 신문 제 3 면 사설의 내용이었다. 따라서 무기대등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이 사건 정정보도문은 마찬가지로 제주신문 1, 2 면의 우측 상단부에 같은 크기로, 그리고 사설의 내용이 문제된 부분은 사설란의 일부를 빌어서 게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정작 광고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주문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에 대한 이유를 설시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법원은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제 7 조 제 1 항을 근거로 이런 주문을 선고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즉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제 7 조 제 1 항은 「법원이 정정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재부위를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정정보도청구권 제도의 취지 자체를 망각한 불합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실시되었듯이 정정보도청구권 제도자체가 무기대등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존립하는 것이라면 위 심판규칙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는 무기대등의 원칙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지법의 위와 같은 해석은 무기대등의 원칙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정정보도청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해석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문기사에 대한정정보도문을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1 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32 면에 게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문사간 증면경쟁으로 지면이 거의 무한정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50) 정정보도문을 심는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한풀이가 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51)

이 판결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제 1 심 판결이며 이 판결에 대하여 신청인 측의 항소가 이루어졌는지 그대로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러한 입장이 장차 법원의 판례로 굳어진다면 정정보도청구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법원은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무기대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52)

2.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또는 보충적 반박의 허용 여부

이 판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정보도문의 앞 또는 뒤에 정정보도문에 관한 언론사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제주지법은 위와 같이 편집자주를 붙일 수 있다는 주문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정정보도심판에 따라 반박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가 여전히 종래의 사실적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사가 아닌 반박보도문 안에서 그 주장을 간략하게나마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철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53)

제주지법의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하다는 것이다.

헌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정정보도문에 대한 또 다른 정정보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정정보도청구 제도 자체가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기사에 대한 반박보도의 게재를 요구할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즉 정정보도에 대한 재반론을 허용할 경우 정정보도청구의 끝없는 반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불허하는 것이다. 또한 일단 정정보도가 있게 되면 이미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이 모두 개진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추가적 반론을 허용한다는 것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엄밀하게 볼 때 정정보도문에 전주 또는 후주의 형식으로 편집자주를 붙여 언론사의 주장을 하는 것이 재반론청구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편집자주를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청구를 재판에서 인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편집자주에 대하여 또 다른 정정보도청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은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반론권의 원래 취지는 고전적 언론자유 이론의 뒷받침을 받아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던 대중매체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정당한 의사를 표명할 방법을 상실한 일반 개개인에게, 대중매체의 표현에 의하여 왜곡된 자신의 의사를 바로 그 대중매체를 통해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함이 옳다고 본다.54) 그리고 반론권 제도 자체는 단순한 피해의 구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대중매체가 자의적인 출판, 방송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대중매체의 권력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권력화한 언론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에 대해 다시 언론사에게 재반론을 허용한다는 것은 반론권 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55)

둘째,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다. 반론권은 언론사의 기사에 대하여 일정한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사의 기사로 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독자나 시청자에게 다른 입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자가 정정보도문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미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기사를 읽거나 시청 한 독자 또는 시청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편집자주를 붙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원문보도를 읽거나 보지 않은 독자나 시청자에게 새삼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언론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낳게 된다. 만약 제주지법의 입장을 그대로 채용하게 되면 정정보도문의 게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익이 새로이 침해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은 여론형성의 한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특히 그 언론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와 관련된 경우에도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론의 자유는 제주지법처럼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또는 보충적 반박을 허용함으로써 가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통하여 달성되고 있다. 즉 현행법은 정정보도의 청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 것이다(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기관은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간물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 방송법 제 41 조 제 3 항 단서). 따라서 정정보도문에 대한 언론사의 보충적 반박 또는 재반론을 허용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없다.

게다가 반론권은 언론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도에 대하여 관련자가 반박문 게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 정정보도문에다가 언론기관의 주장을 다시 덧붙인다면 이것이야말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 할 때 '대등'이라는 말은 바로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도무지 제주지법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

넷째, 이와 같은 이유로 그 게재여부는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법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정정보도문에 언론기관의 입장을 어떤 형식으로든 덧붙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다. 특히 광고란에 게재를 허용하면서 그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제 7 조 제 1 항에도 정정보도문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반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법원이 거론하고 있는 다른 사유 모두가 법원의 판결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법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순전히 자신의 재량만으로 언론기관의 재반론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된다.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작용이 사법인데 제주지법은 법에 없으니까 아예 입법을 해 버렸다.

VI. 정정보도 게재 거부 사유

정간물법과 방송법은 언론사가 정정보도 게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정간물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 방송법 제 41 조 제 3 항 단서),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판결은 아직 보이지 않으나 나머지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서울지법이 1992년의 한 판결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실시 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옮겨 본다.

「사실보도에 관하여도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예컨대, 원문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됨에 불과하거나, 언론기관 자신이 속보 등의 형식을 빌어 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하거나, 언론기관 스스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반론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요구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 보도와 다른 내용이 없거나 오히려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을 합리화하는 내용인 경우, 인터뷰 등에 의한 충실한 보도가 있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원문 기사를 왜곡 해석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등의 경우...등에는 언론기관이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56)

이 판례에는 정정보도 게재거부사유로서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7가지 정도 예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의미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앞의 세가지 정도라고 생각되므로 이들에 관해서만 살펴보자.

(1)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되는데 불과한 경우

이는 1986년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이론으로 그 후 법원의 확고한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그 판시이유를 보자.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중에는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7)

법원이 실시 하였듯이 이러한 예외를 둔 이유는 「(정정보도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함으로써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언론활동의 마비 내지는 위축을 아울러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기사의 본질적 핵심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 오기나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언론기관이 정정보도문을 무한정 게재해야 한다면 여론형성이라는 언론의 사명 수행에 적지 않은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정당하며 특별히 이에 대하여 언급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상당한 자의가 개입할 소지가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예를 잘 보여준 사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나온 서울민사지법의 한 결정 58)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신문의 기사 중 「범민련은 걸으로는 남북합의서 이행 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실제로는 반전, 반핵,미군 철수 등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범민련이 그 게재를 청구한 정정보도문 중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1 국가 2 체제라고 한다면, 고려연방제는 1 국가 2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북한과 범민련의 노선 중 일부 차이가 있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위 기사 및 정정보도문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정정보도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의 핵심은 범민련과 북한의 노선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그 중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연방제인데도 이를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어 결국 법원의 상당한 자의가 개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59) 물론 어떤 것이 본질적인 핵심이고 어떤 것이 지엽말단적인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그 기준은 앞에서 본 여러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심 없는 독자의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60)

(2) 언론기관 자신이 속보 등의 형식을 빌어 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한 경우

언론기관이 이의의 대상이 된 보도를 한 후 후속보도나 속보, 기타의 형식을 통하여 원문보도의 내용을 충분히 정정하였다면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입장이 이미 대등하게 발표된 것이므로 따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언론기관의 공적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고 설사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론권의 전제인 무기대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어떤 경우에 충분한 정정보도가 있다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바는 없지만 여러 판결의 태도를 통해 볼 때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의 크기 및 배치,61) 잘못된 부분의 특정 및 그 부분에 대한 반대 견해 게재 여부,62) 게재 내용과 분량 등 63)이 그것이다. 즉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언론사가 게재한 후속보도가 원 보도와 비교하여 그 비중에서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충분한 정정보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64)

(3) 언론기관 스스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반론

기회를 부여한 경우 먼저 원문보도에 반론을 함께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한」 반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신청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해명하는 바를 같은 기사에 포함시켜 기사화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측의 취재결과가 기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 기사 중에 신청인의 반박취지가 일부 실렸다 하여 이로써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5)

위의 판결을 보면 결국 충분한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이에 대한 관련자의 반박이 서로 대등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고, 반박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사의 주장이 기사의 주류를 이룬다면 피해자에게는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서 높이 평가 받아야 하리라고 본다. 66)

한편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사건에서 법원은 방송뉴스 시간의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반박대담 장면이 짧게나마 방영되었고 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박기회를 준 경우 피해자에게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67)

이 사건에서 이의의 대상이 된 방송 전체시간에서 반박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방송사의 주장이 보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8) 따라서 앞에서 본 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이런 경우 충분한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것만으로 방송사가 정정방송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다른 토론 프로그램에서 충분한 반박의 기회를 제공했다 하여 69)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박의 기회가 원문보도와 같은 면에, 혹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들어 충분한 반박의 기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이러한 문제는 방송에서 생겨나리라 생각된다. 정기간행물에서는 이와 같은 후속보도는 원문보도와 같은 면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방송에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그 효과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 통상적으로 뉴스방송은 토론프로그램에 비하여 시청률이 매우 높음을 고려할 때 그 효과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토론시간의 반박으로 뉴스시간의 보도의 효과를 상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성급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2.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언론사가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유로 각급 법원의 판결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정정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 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언론기관에게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 41 조 제 3 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70)

위 판례에 따르면 결국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실을 추구하여야 할 언론의 직업 윤리상의 의무와 사회공익을 고려한 것이다. 정정보도청구라는 이름으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사항을 언론으로 하여금 보도하도록 강제한다면 진실하지 못한 정보가 전파되어 결국 사회의 공익에 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저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려는 매우 당연한 것이며 설사 정간물법이나 방송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므로 71) 이와 관련하여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즉 정정보도청구는 원문보도가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진실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결국 사실에 반하는 것이 되어 언론사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므로, 이렇게 되면 정정보도청구는 결국 허위보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대답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현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소명이 없는 경우라면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72) 위에 인용한 판례와 같이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가 일정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정보도 문 역시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예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보도가 실제로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원문보도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결국 현행법 규정상의 「사실적 주장」에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달리 앞에서 밝힌 것처럼 「사실적 주장」을, 객관적 사실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접하는 독자나 시청자가 객관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포함한다고 이해할 때에는 보다 논리 정연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현행법은 정정보도 게재의 거부 사유의 하나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정간물법 제 16 조 3 항 단서, 방송법 제 41 조 3 항 단서), 이 역시 법 소정의 「사실적 주장」이 「사실주장」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적 주장」이 「사실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정정보도청구를 허용하는 규정취지 자체와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진실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정정보도는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정정보도는 게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둔 것은 순수한 사실보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73) 예컨대 일정한 가치판단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는데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방송법 제 41 조 3 항 소정의 위 문구는 바로 이런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74)

3. 공익을 위한 보도

한편 각급 법원의 판결에서 정정보도 게재거부 사유의 하나로 인정되느냐에 관하여 종종 문제되는 것이 이른바 공익을 위한 보도의 경우이다. 공익과 관련한 대표적인 판결을 보자.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공개이익과 개인의 명예 등 법익보호 필요성 사이의 이해조절관계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사실보도에 한하여 반박 또는 해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정당한 것이고 또한 관계인의 반론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언론의 공개이익만을 내세우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75)

이 판결은 정정보도청구 제도 자체가 언론의 공개이익과 개인의 법익 간의 이해조절을 위하여 나온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다시 언론의 공익성을 들고 나오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의 공익성을 이유로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법하며, 이는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린 판결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밖에 공익과 관련한 판결례를 살펴보면, 문제된 기사가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명예 훼손 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거나,76) 원문보도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경우라 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거나,77)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이상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등이 있다.78)

이와 같은 판결이 언론사의 보도관행을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언론사로서는 이제 추상적인 공익만 떠벌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 보도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겸허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VII. 맺는 말

이상에서 나는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법원이 10 여 년에 걸쳐 선고한 판결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분석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현행 정간물법이나 방송법 규정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원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란 정확성과 완전성의 심사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기고문이나 인용형식의 보도, 기사의 표제나 편집자주 등도 사실적 주장에 포함된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을 널리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정간물법 제 16 조 제 6 항, 방송법 제 41 조 제 7 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방송)」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아직은 사실적 주장과 가치판단을 준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법원에 따라서 또는 사안에 따라서 그 판단에 법원의 자의가 개입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셋째, 법원은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능력이나 피해자 역시 널리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 능력의 범위를 민사소송법보다 넓은 것은 물론 「피해를 받은 자」의 개념을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자」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그 인정 기준을 독자의 판단으로 삼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사실적 주장 여부를 인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독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정정보도문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최근의 한 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입장에서 매우 퇴보하는 입장을 보여 주었다. 즉 본문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광고란에 하도록 하는 한편 정정보도문에 언론사의 주장을 편집자주의 형식으로 덧붙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반론권의 근거가 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정보도문의 게재사유에 관한 판단에서는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정당한 이익 유무의 판단에서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라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을 채택한 것이나, 반론기회를 제공한 경우에 대한 다소 폭넓은 해석 등이 이런 경우이다. 또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말미암아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법원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론권 제도 자체에 대한 좁은 이해로 인하여 그러한 노력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순전히 법원의 「재량」만으로 정정보도청구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최근 제주지법의 판결과 같은 태도는 하루 바빠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 학원론」 (법문사 /1992) .
김종서,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 5 집 (헌법재판소 /1994. 9) .김철수, 「헌법 학개론」 (박영사 /1992) .
김택환, "독일 자를란트주 신문법 반론권 조항개정 ", 「신문과 방송」, 1994. 7.
박용상, "언론기본법", 김철수 편, 「정치관계법」 (박영사 /1983).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언론중재」, 1991. 가을.

박용상,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언론중재」, 1991. 봄.

송정수시, "반론권", 김동민 편역, 「언론민주화의 논리」 (한울 /1992) .

양 건, "반론권에 관한 소고-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의 사례 · 판례를 중심으로-" 「현대공법의 이론」 (목촌 김도창 선생 화갑기념/1982) .

양 건, "반론권 행사의 실제", 「언론중재」, 1982 여름.

양삼승, "반박보도청구권(반론권)", 「인권과 정의」, 1989. 5.

양삼승,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반박보도청구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언론중재」, 1992. 가을.

장영수, "최근의 언론관계 판례 개관", 「언론중재」, 1993. 가을.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이론」 (법문사/1983) .

Delp, L. /Lutz, P., Sammlung Delp-RdPubl.(Das Gesamte Recht der Publizistik), Bd. 2(Mu"nchen : Rehm-Druck, 1986) .

주

1) 물론 입법론이나 제도론적인 입장에서 기술된 글들에서 판례의 입장에 대한 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판례의 입장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2) 예컨대 양건은 정정보도청구권 제도는 반론권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다. 양건, "반론권행사의 실제", 「언론중재」, 1982 여름, 57 면 :양건, "반론권에 관한 소고-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의 사례 ·판례를 중심으로-", 「현대공법의 이론」 (목촌 김도창선생 화갑기념 /1982), 174 면.

3)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 다카 1973 판결.

4) 서울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1983. 11. 17, 82 타 20095 결정.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12. 20, 89 카 8917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9. 6, 93 카합 792 판결, 제주지법 196.16, 94 카합 27 판결 등.

6) 1991. 9. 16, 89 헌마 165 결정.

7) 대법원 1991. 1. 15, 90 다카 25468 판결. 특히 이 판결은 학설상 반론권의 근거로 흔히 이야기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8) 이에 대하여 학설은 「사실적 주장」을 독일의 각 주 출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주장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나는 이것이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김종서,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 5 집(헌법재판소 /1994.9) , 497~502 면.

9) 서울민사지법 1993. 9. 6, 93 카합 792 판결.

10) 서울지법 1992. 11. 30, 92 카합 3879 판결.

11) 대법원 1991. 1. 15, 90 다카 25468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1990. 2. 6, 89 나 30506 판결

- 13) 서울고법 1992. 8. 20, 91 나 64670 판결.
- 14) 수원지법 1993. 7, 30, 93 카합 312 판결.
- 15) 서울민사지법 1983. 8. 19, 83 카 9146 판결.
- 16) 서울민사지법 1983. 5. 24, 83 카 7933 결정. 이 결정에서는 교회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 중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신청인에게 피해를 준 바 없고 나머지 부분은 비평 또는 논평으로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기고문이라 하더라도 사실적 주장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 17) 서울민사지법 1990. 5. 25, 89 카 28984 판결.
- 18) 『남원시 도시계획에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과 『일부 의회의원들 지나친 간섭』이라는 소제목 하에 「특히 시의회의원들은...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러한 전문형식의 보도태도가 다소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피신청인의 보도태도가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기는 하나 피신청인측의 위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예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전주지법 1992. 10.29, 92 카기 50 결정.
- 19) 이러한 우려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1. 26, 92 카기 649 결정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이 판례에서 문제된 보도는 범민련의 결성 경위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이어진 「따라서 범민족대회를 위한 범민련의 제 1 추진 주체는 베를린 3자 회담을 주도한 북한공산정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기사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는 위 범민련의 제 1 추진 주체에 관한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 내지는 의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사실적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매우 어렵게 한다. 범민련의 추진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나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적 주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위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그것이 의견이든 사실의 주장이든 간에 범민련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단체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 명백한데도 말이다. 김종서,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498~499 면 참조.
- 20) 김종서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520 면 이하. 그런데 현재 법원은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만 독자 또는 시청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사실적 주장인지 가치판단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 21) 사회일반인의 의식구조 속에서는 신문이나 방송 등에 의하여 일반 보도된 사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양삼승, "반박보도청구권(반론권)", 「인권과 정의」, 1989. 5, 27 면. 이은 박용상도 지적하고 있다. 「논평이나 비판 등 의견표현은 보통 사실관계에 근거하게 마련이고 선정적인 잡지언론에서는 사실주장과 함께 주관적인 평가나 가치판단이 혼합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내용 중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과의 한계가 모호해지기 쉽다. 이 경우에는 의견과 사실 중 무엇이 전면에서 서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사실주장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표준이 되는 것은 사실 없는 일반 독자가 받는

- 만상이다。」 박용상,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 「언론중재」, 1991 봄, 23 쪽.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판단표준은 앞서 본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인되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1. 26, 92 카기 649 결정.
- 22) 이와 같은 진실보도 의무는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 9 조에 규정되어 있다가 현재는 없어졌으나 이러한 의무는 진실의 전달자여야 할 대중매체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조리상의 의무라고 한다. 김철수, 「헌법학개론」(박영사/1992) 454~455 면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1992),419~420 면 참조.
- 23)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93 카기 3254 판결.
- 24) 서울민사지법 1984. 11. 30, 94 카 34374 판결; 서울민사지법 1984. 11. 30, 94 카 34375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 15, 92 카기 474 결정.
- 25) 대법원 1986. 1. 28, 85 다카 1973 판결.
- 26) 서울민사지법 1993. 12. 6, 93 카기 3254 판결.
- 27) 서울민사지법 1983. 8. 19, 83 카 9145 판결(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서울민사지법 1983. 8. 19, 83 카 9146 판결(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 28) 서울민사지법 1983. 11. 25, 83 카 22003 판결.
- 29) 서울고법 1985. 8. 16, 84 나 2524 판결.
- 30) 서울민사지법 1992. 11. 26, 92 카기 649 결정.
- 31) 청주지법 1990. 7. 21, 90 카 1874 결정
- 32) 대법원 1986. 1. 28. 85 다카 1973 판결.
- 33) 학설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용상, "언론기본법", 김철수 편, 「정치관계법」(박영사/1983), 201 면 양삼승 "반박보도청구권(반론권)", 27 면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이론」(법문사 /1983), 165 쪽.
- 34) 김종서,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502~503 면 및 522~525 면 참조.
- 35) 춘천지방법원 1989. 11. 3, 88 카 1616 판결. 수원지법 1991. 12. 20, 90 카 18577 판결, 전주지법 1992. 10. 29,9250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피해 유무 판단에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범위를 가급적 널리 인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되나 실무상으로는 보도의 진실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최근의 언론관계판례 개관", 「언론중재」, 1993 가을, 40 면 참조.
- 36) 서울민사지법 1982. 9. 3, 82 카 18633 판결.
- 37) 서울민사지법 1986. 9. 26, 86 카 28755 판결; 서울고법 1987. 3. 18, 86 나 4096 판결.
- 38) 서울민사지법 1990. 5. 25, 89 카 28984 판결.
- 39) 서울민사지법 1990. 7 19, 90 카 41568 판결.
- 40) 서울민사지법 1993. 9. 6. 93 카합 792 판결.
- 41)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언론중재」, 1991 가을, 13 면 : 양삼승"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반박보도청구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언론중재」, 1992 가을, 10 면 : 양삼승, "반학보도청구권(반론권)", 33 면.

- 42) 박용상은 오히려 가치판단인가 사실주장인가를 결정하는데 사심 없는 독자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용상,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23 면.
- 43) 서울민사지법 1983. 8. 26, 83 카 17754 판결.
- 44) 박용상은 「원고청탁이나 출연계약 시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언론사가 형편에 따라 편의적으로 수정과 삭제를 하여 작자의 전체적인 집필의도가 왜곡 전달되거나 중요한 점에서 변경이 가해졌다면 원문대로 보도해 달라는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반대하고 있다. 박용상,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30 면. 그러나 이런 경우는 위 판결에서도 실시하고 있듯이 사안에 따라 민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기한 청구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45) 서울민사지법 1984. 11. 30, 84 카 35089 판결.
- 46) 박용상, "언론기본법", 211 면.
- 47) 물론 현행법의 규정이 무기대등의 원칙에 과연 충실한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관해서는 김종서,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525~529 면 참조.
- 48) 제주지법 1994. 6. 16, 94 카합 27 판결의 주문.
- 49) 서울민사지법 1984. 11. 30, 84 카 34374 판결: 서울민사지법 1984. 11. 30, 84 카 34375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 15, 92 카기 474 결정.
- 50) 평상시에도 40~50 면의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1995년 1월 1일자 신년특집 신문의 경우 최고 100 면까지 발행되었고 중앙일간지의 경우 대개 80 면을 상회한바 있다.
- 51) 만약 이를 방송에도 적용한다고 한다면 9시 뉴스시간의 보도에 대한 정정방송을 광고방송시간에 해도 좋다는 것이 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도 이러한 해석은 극히 불합리한 것이다.
- 52) 독일 각주 출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정보도문은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과 같은 면에, 같은 크기로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53) 제주지법 1994. 6. 16, 94 카합 27 판결. 이 판결의 관련부분 주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피신청인은...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의 앞에 전주의 형식으로 또는 뒤에 후주의 형식으로 본문활자 200 자의 범위 내에서 정정보도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게재 할 수 있다. 」
- 54) 송정수시 "반론권", 김동민 편역, 「언론민주화의 논리」 (한울 /1992). 185 면.
- 55) 이와 관련하여 과거 독일의 경우 편집부가 반론에 대해 사실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연 설명할 수 있었으나, 1994. 5. 12. 개정된 자를라트주 출판법에서는 반론이 게재된 동일한 면에 반론에 대한 질책, 반박성의 기사를 신문사가 게재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이 개정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왜곡된 언론의 자유로부터 「수용자 주권」, 즉 시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를라트주 출판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김택환, "독일 자를라트주 신문법 반론권 조항 개정", 「신문과 방송」 1994. 7 참조.
- 56) 서울지법 1992. 2. 20, 89 카 8917 판결.

- 57) 1986. 12. 23, 86 다카 818 판결. 그 후의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0. 8, 92 가합 16462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 11. 26, 92 카기 649 결정 등이 있다.
- 58) 서울민사지법 1992. 11. 26, 92 카기 649 결정,
- 59) 박용상은 "사소하다는 것은 신청인이 원하는 바대로의 정정보도를 해 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명예회복이나 입장해명에 아무 도움이 될 수도 없을 정도로 사소하여 정보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원의 이런 태도는 매우 자의적인 것이다. 박용상,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31 면
- 60) 박용상은 본질적 핵심이란 표현은 정정보도청구권의대상을 너무 한정하는 것으로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박용상,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 32 면.
- 61) 서울민사지법 1989. 12. 29, 89 카 46152 판결.
- 62) 서울고등법원 1990. 2. 6, 89 나 30506 판결.
- 63) 서울민사지법 1990. 7. 19, 90 카 41568 판결.
- 64)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서류를 조사하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3 차례에 걸쳐 해명기회를 주는 등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다음 게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한 예도 있다. 서울민사지법 1993. 12. 11, 93 카기 3786 결정.
- 65) 서울민사지법 1993. 12. 11, 93 카기 3786 결정.
- 66)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신청인인 학교의 직원을 만나서 신청인 측의 반박기회를 주고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 신청인에게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한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수원지법 1991. 11. 20, 90 카 18577 판결.
- 67) 서울지법 1992. 2. 20, 89 카 8917 판결.
- 68) 이 사건방송은 문화방송 뉴스센터 시간에 약 11 분 20 초에 걸쳐 방영된 「천방지축조의 담임」이라는 제목의 보도였다. 신청인인 최교사의 대담방송을 방영하였다고 하나 그 부분은, 11 분 20 초의 방영부분 중 「위와 같은 학부모들의 항의는 사실이 아니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전화는 유언비어라고 말씀 드렸는데 자꾸 이러면 교사탄압 사례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신청인의 반박편지 내용에 관한 부분과 「위와 같은 분단의 명칭은 학생들이 만화를 보고 나름대로 정한 이름일 뿐 신청인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내용의 대담장면,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한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사회 동태성의 민감한 배양 기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과 교육 목표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데, 신문스크랩 내용은 이를 직접 지도한 바는 없고 단지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제시한 것일 뿐」이라는 반박대담장면밖에 없다.
- 69) 「박경재시사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 신청인인 최교사와 최 교사의 교육활동에 동조하는 현직교사 유인성, 박종호와 교육구청 학무과장, 최 교사의 교육활동에 비판적인 현직교사 잠재원 및 이규철을 출연시켜 「무엇이 참교육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신청인의 의견 및 주장을 방영하였다
- 70) 서울민사지법 1993. 9. 6, 93 카합 792 판결. 김부름군의 전학이유가 돈봉투와 관련된 것이라는 방송보도에 대하여 전학은 김부름군 부모의 종교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정정보도를

요구한 데 대하여 이러한 정정보도문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지법 1993. 10. 8, 92 가합 16462 판결.

71) 대법원 1986. 1. 28, 85 다카 1973 판결: 대법원 1991.1. 15, 90 다카 25468 판결.

72) 서울민사지법 1993. 11. 15, 93 카기 3887 결정 서울민사지법 1993. 12. 11, 93 카기 3786 결정.

73) 이러한 해석은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예외 사유를 확장하여 해석, 적용할 우려(양건, "반론권에 관한 소고-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의 사례 · 판례를 중심으로... 176 면)를 방지 하는 측면도 있다.

74)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사실의 주장」(Tatsach-enbehauptung)에 대해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바델-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1 항, 베를린주 출판법 제 10 조 1 항, 브레멘주 출판법 제 11 조 1 항, 함부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1 항, 헤센주 출판법 제 10 조 1 항, 너더작센주 출판법 제 11 조 1 항,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제 11 조 1 항, 라인란트-팔츠주 출판법 제 11 조 1 항, 자르란트주 출판법 제 11 조 1 항,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 출판법 제 11 조 1 항. 다만 바이에른주 출판법 제 10 조 1 항은 「보도된 사실」이라고 하고 있다. 이들 법률을 수록한 문헌으로는 Delp, L. /Lutz, P., Sammlung Delp-RdPubl. Das Gesamte Recht der Publizistik, Bd. 2(München : Rehm-Druck, 1986) 참조. 그런데 독일에서조차도 「사실」이라는 개념은 널리 해석되고 있다. 특히 독일신문평의회가 공표한 반론권 취급기준은 「의견인가 사실주장인가 의문이 있는 경우는 지나치게 엄격한 척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송정수시, "반론권", 193 쪽. 이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의」 주장도 아니고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법의 태도는 사실에 대한 해석을 독일의 경우보다 더욱 넓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2. 20, 93 카합 1107 판결.

76) 서울민사지법 1989. 12. 29, 89 카 52256 판결.

77) 대법원 1991. 1. 15, 90 다카 25468 판결.

78) 서울지법 1991. 9. 9, 91 카 7204 판결.

□ 서울대 대학원(법학 박사), 헌법재판소 연구원

□ 저술: 「시청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재판의 실상에 대한 통계적 분석」 외

□ 현재 배재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